

공 고

- 중구민을 위한 도시 -



서울특별시 중구



수신 내부결재
(경유)

공고제 91호

제목 서울특별시 중구 초등학생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교육아동청소년과-1877(2019.2.1.)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중구 초등학생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규칙」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문안 : 붙임

나.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구보게재 및 구동 게시판에 공고

다. 공 고 일 : 2019.02.08.

라. 공고기간 : 2019.02.09. ~ 2019.02.28.(20일간)

붙 임 : 입법예고문(안) 1부. 끝.

공
고

공
고

주무관	윤서윤	돌봄지원팀장	이수정	교육아동청소년과 과장	代강계숙	생활복지지원과 장	국전결 02/07 이인모
-----	-----	--------	-----	----------------	------	--------------	------------------

협조자	주무관	남수윤	의회법제팀장	의회법제팀장	박유진
-----	-----	-----	--------	--------	-----

시행 교육아동청소년과-1919 (2019.2.7) 접수 ()
우 04558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예관동) / <http://www.junggu.seoul.kr>
전화 3396-4883 /전송 / sosoro1237@junggu.seoul.kr / 대시민공개

공 고

- 돌봄 시설 설치 및 운영 등 관련 사항(안 제7조~제9조) : 시설의 설치 운영, 시설·단체의 위탁 관련 사항, 사고 대비 보험 가입 및 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
- 지역 돌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사항(안 제10조~제14조) : 위원회 구성 및 임기, 회의 운영, 의견 청취, 위원 수당
- 교육 및 워크숍, 지도·감독, 예산·결산, 포상 등(안 제15조~제1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참조 : 교육아동청소년과,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 (예관동), 문의전화 : 3396-4883, FAX: 3396-8636, 메일 : sosoro1237@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 1. 서울특별시 중구 초등학생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 중구 초등학생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등학생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중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2.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 시간 외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3. “돌봄 지원”이라 함은 돌봄 아동에게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 문·예·체 프로그램, 급·간식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4. “돌봄 시설”이라 함은 초등학생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구청, 기관, 단체, 개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 또는 구가 직접 운영하는 학교 안 돌봄교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돌봄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돌봄 종합계획 수립) 구청장은 초등학생 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돌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 및 추진 목표
2. 돌봄에 관한 재원조달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3. 돌봄 시설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돌봄에 관한 관계 기관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돌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돌봄 사업 지원) 구청장은 돌봄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통합지원 체계 구축 사업
4. 돌봄 민·관 협력과 지역 연계 사업
5.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6. 돌봄 인력 양성 과정 지원 사업
7. 돌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조사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지원) ①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은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급·간식 제공 등의 돌봄 서비스
2. 정서적 함양 및 아동 건강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② 구청장은 양질의 돌봄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제7조(돌봄 시설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돌봄 수요와 시설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돌봄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설치 시 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고려하여 선정
2. 초등학생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곳으로 선정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으로 선정

② 지역 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확대하여 아동 돌봄 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위탁) 구청장은 돌봄의 전문성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원 시설의 운영 등을 관련 시설·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안전) ① 구청장은 돌봄 시설 및 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

③ 관계 공무원은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 관계자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지역돌봄협의회 설치) ① 구청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및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돌봄협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돌봄 운영 계획 심의·자문
2. 돌봄 시설간의 연계 및 조정
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4. 돌봄 서비스 홍보 및 돌봄 관계자 공동 교육
5.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지역돌봄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교육지원청 및 지방자치단체 돌봄 사업 관련 공무원, 돌봄시설 관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회는 민·관 협력 돌봄 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권역별로 실무추진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

럽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해당 협의회를 연 2회 정기 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돌봄 지원 담당 팀장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돌봄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돌봄 시설 관계자의 교육 훈련) 구청장은 돌봄 관계자의 전문성 향상 및 우수사례 전학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지도·감독)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예산이 지원되는 돌봄 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예산·결산) 예산이 지원되는 돌봄 시설 및 단체는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포상) 구청장은 돌봄시설 확충 및 민간 협력 돌봄 사업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